5.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발의일자 : 2019년 7월 5일

○ 발 의 자 : 이영애 의원, 강민구 의원, 김규학 의원, 김대현 의원, 김태원 의원, 박우근 의원, 윤영애 의원, 이만규 의원, 임태상 의원, 정천락 의원, 하병문 의원, 황순자 의원

○ 회부일자 : 2019년 7월 8일

○ 상정일자 :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문화복지위원회(2019년 7월 22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영애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·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출산 및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□ 주요내용

○ '공공산후조리원'에 대한 정의를 규정(안 제2조)

○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(안 제7조제3항)

○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(안 제16조의2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○ **안 제2조**는 '공공산후조리원'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,

○ **안 제7조제3항**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으며,

○ **안 제16조의2**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을 통해 출산·양육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및 양육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.

○ 특·광역시나 도에서 직접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7에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규정[3]이 있고,

3) 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○ 대구시에서도 저출산 극복, 출산친화적 환경조성, 취약계층 출산·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'대구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' 설립을 기추진 중으로 설립·운영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이 필요하겠음.

○ 다만 대구시의 2018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,546명이 감소한 14,40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, 최근 3년간 감소의 폭이 더욱 커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, 출산·양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인한 민간업계에서 반발이 있지는 않은지?	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(10~15실)하더라도 산후조리원 전체규모의 2%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업계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임.

5. 토론요지

○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.